

청정^韓완도

♡ ♡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♡ ♡

— 2015. 9. 21 ~ 9. 23(3일간) —

2015년 해조류산업지원사업소 정기 종합감사 결과



완 도 군
(기 획 예 산 실)

2015년 해조류산업지원사업소 정기 종합감사 결과

- ❖ 2015. 9. 21. ~ 9. 23. (3일간) 해조류산업지원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 3건, 주의 3건으로 총 6건이 지적 되었음.
- ❖ 지적사항의 대부분은 업무연찬 부족과 관심 미흡에 따른 사안 임

감사배경

- 해조류산업지원사업소 담당별 업무처리 실태,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및 각 분야별 관련 규정, 집행지침 등을 준수 등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점검.
- 감사를 통하여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2017해조류박람회 준비에 기여

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15. 9. 21. ~ 9. 23. (3일간)
- 감사범위 : 2013. 10. 1 ~ 감사일 현재까지
- 감사요원 : 감사담당 외 3명(오영호, 조성영, 김채호)

감사중점사항

- 해조류지원사업소를 대상으로 회계 관련 규정 및 예산집행절차 준수, 업무 추진비 집행 실태,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등에 중점을 두고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감사실시

감사조치사항

- 감사에 지적된 사례 및 현지조치사항에 대하여
 - 내용이 경미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의하여 현지 구두 조치
 - 시정 가능한 사례에 대하여는 자체 직무 교육을 통한 주의 촉구

감사총평

- 세출분야는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을 위반하여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기자간담회 등 접대성경비 지출시에 대한 위반사항 및 신용카드사용시 회계처리절차, 지역개발채권 매입 등이 지적되었으며,
- 공사·계약분야는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라, 시설공사 대가를 지급하면서, 환경보전비를 정산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지적됨
- 상기와 같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관계법령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·개선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.

지적사항

● 처분건수

행정상			재정상				신분상				
계	시정	주의	계	추징	회수	기타	계	징계	경고	훈계	주의
6	3	3	490	-	385	105	2	-	-	-	2

- 회수 : 385천원(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 385천원)
- 매입 : 105천원(지역개발공채 매입에 관한 사항 105천원)

세부 지적사항

세 출 (5건)

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

- 『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칙』에 따르면,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, 언론 관계자 및 타기관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함
- 그럼에도, 해조류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2017년 해조류박람회 개최에 따른 000간담회 경비 지급 등 총 6건,1,304천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함

* 2015년도 해조류산업지원사업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,000천원(250천원 * 12개월)

②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

- 『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』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을 보면,신용카드 사용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인 예산집행품의를 선행하고 지출을 결정하는 지출원인행위(신용카드 결제)를 해야함
- 그럼에도,해조류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2014.6.28 직원격려회식비 외 4건을 집행 하면서 사전품의없이 지출결의(신용카드 결제)를 하여 『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』에 의한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③ 지방재정시스템 청백-e 상시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사항

- 『완도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』에 따라,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 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백-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
- 해조류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청백-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조치대상 15건 중 13건을 미조치하여 조치율이 6%로 저조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

* 주요 미 조치사항 : 동일인 지급명령 및 승인, 일정기간내 동일업체 결제, 준공일 미준수 등

④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일반운영비 지출에 관한 사항

- 『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』에 따라, 예산과목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자산취득비로 집행해야 할 제분기 4510천원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할 차재료 구입 779천원을 사무 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2014년~2015년 6건 6,103천원의 세출예산을 집행 하면서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함

⑤ 지역개발채권(공채) 매입에 관한 사항

- 『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』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등과 100만원 이상 공사,용역계약,물품구매·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채를 매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채매입사실 확인 후 계약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
- 그럼에도, 해조류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해조류센터 화장실 온수기 설치공사 등 3건의 공사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역개발 채권 매입확인을 소홀히 함

공사계약 (1건)

①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사항

- 『건설기술진흥법』에 따라,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,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환경보전비 실적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함
- 그럼에도, 해조류센터 목재테크 도장공사 등 시설공사 대가를 지급하면서, 4건 385천원을 정산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등 환경보전비 사후 정산업무를 소홀히 함